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9.)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 현 정]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1.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1. 19.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3.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나. 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4.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말 조성액 ①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 감 ⑤=④-①	
		수입 ②	지출 ③			
합계(8개)	13,007,423	160,833,165	751,483	173,089,105	160,081,682	
총 무 위원회	재정안정 회적립금	0	160,000,000	0	160,000,000	160,000,000
	중소기업 육성기금	6,547,214	107,100	210,000	6,444,314	△102,900
	식품진흥 기금	84,318	18,460	7,260	95,518	11,200
	사회복지 기금	3,362,582	176,726	106,000	3,433,308	70,726
	아름예술체 진흥기금	500,453	6,444	6,400	500,497	44
	체육진흥 기금	1,083,224	17,871	20,000	1,081,095	△2,129
산업건설 위원회	재난관리 기금	1,146,296	480,218	393,223	1,233,291	86,995
	옥외광고 발전기금	283,336	26,346	8,600	301,082	17,746

〈재정안정화적립금 변경안〉

(단위:천원)

수입변경계획				지출변경계획			
항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감	항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감
합 계	0	100,000,000	100,000,000	합 계	0	100,000,000	100,000,000
전입금	0	100,000,000	100,000,000	비용자성 사업비	0		
예치금 회수	0		0	예치금	0	100,000,000	100,000,000

5. 검토의견

□ 재정안정화 기금 개념

- 경기변동에 따르는 유동적인 세입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이 큰 폭으로 증대 시 적립하고, 하락할 때 기금을 운용
-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 대규모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우리군 재정여건

○ 경상일반재원 세입 (단위 : 억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지방세	196	213	241	267	269	
세외수입	141	161	155	190	189	
보통교부세	1,981	1,855	1,798	2,250	2,369	2,720(2019년)
조정교부금	115	175	188	271	212	240(2019년)

○ 순세계잉여금 (단위 : 억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423	556	797	1,338	1,744	일반회계

○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단위 : 억 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추정)
250	261	316	653	1,349	1,952*

* 1,952억 원 = (순세계잉여금 발생 1,744억 원 - 반영 729억 원) + 937억 원

□ 적립요건

구분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보통교부세
적립 요건	①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10% 이상 초과	②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를 초과한 경우	③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④최근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적립 비율	①초과분의 30% 이상	②초과분의 30% 이상	③초과분의 30% 이상	④초과분의 20% 이상

□ 적립금 분석

○ 최근 3년간 세입 여건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평균	비 고
지방세	21,316	24,112	26,748	24,059	
순세계잉여금	55,609	79,729	133,769	89,702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비 고
보통교부세	179,841	225,037	236,880	213,919	
조정교부금	18,798	27,123	21,089	22,337	

○ 적립 가능액 : 103,585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지방세	순세계 잉여금	보 통 교부세	조 정 교부금	비고
3년 평균(A)	24,059	89,702	213,919	22,337	
적립요건(B)	29,655	107,642	235,310	24,570	
세 입(C)	26,925 (2018년)	174,462 (2018년)	272,075 (2019년)	24,034 (2019년, 추정)	
적립 가능액 (C-B)	적립불가	66,820	36,765	적립불가	

□ 검토의견

- 경상일반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며
-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예비비로 편성, 순환 반복
- 당초 여유 재원 1,00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였고 잉여금 600억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